

勞 動 經 濟 論 集
第17卷(2), 1994. 12. pp.357~368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南北韓 經濟交流와 人力問題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Manpower Issues

金 有 培*

< 目 次 >

I. 序 論	III. 南北韓 經濟交流와 人力問題
II. 南北韓 經濟交流의 現況과 推進 方向	IV. 맷 음 말

I. 序 論

남북한 경제교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과 미국간 제네바회담의 타결로 작년 3월 북한의 핵화산금지조약의 탈퇴 이후 중단되어 온 남북한 경제협력이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남북대화를 비롯하여 아직도 양측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남북경협의 해빙무드는 자연스럽게 조성될 전망이고 조만간에 정부에서도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그룹은 평양이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또는 남포공단에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실무준비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기업인과 기술자의 방북허용이 검토되고 소규모 투자사업에 대비해 개별기업들은 북한쪽과 본격 접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¹⁾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남북한의 통일문제는 이제 현실적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독일의

* 成均館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1) 한겨레 신문, 1994, 10월 20일자 1면.

통일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체제가 기본적으로 다르고 경제력의 격차가 현저히 다른 두 지역이 순조롭게 통일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이르건 늦건 간에 통일에 대한 대비는 빠를수록 좋다.

남북한은 같은 민족이지만 체제와 이념을 달리한 지가 근 50년에 이르고 있고, 양자간의 경제력의 차이가 상당수준에 이르고 있어, 상호교류 및 통합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노정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세심한 접근으로 시행착오 및 비용을 줄여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 경제교류가 본격적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통일이라는 장기적인 전망하에 단기적인 인적·물적 교류에서부터 비롯하여 경제통합에 이르기까지 제기되는 제반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현안 당면과제인 남북한 경제교류 및 인력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경제교류에 따른 구체적인 인력활용방안 및 노동시장 통합에 대해서는 다음 주제발표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여기서는 남북한 경제교류 및 경제통합에 따른 인력활용에 관해 개괄적으로만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Ⅱ장에서는 남북한 경제교류의 현황 및 추진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제Ⅲ장에서는 남북한 경제교류에 있어 고려해야 할 인력문제를 경제교류단계와 경제통합단계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제Ⅳ장에서는 결론이 제시된다.

II. 南北韓 經濟交流의 現況과 推進方向

1. 南北韓 經濟交流의 意味

남북한 경제교류의 필요성은 향후 통일이라는 대전제에서 볼 경우 상호교류를 통한 신뢰회복 및 경제협력을 통한 통합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당위적인 측면을 갖는다.²⁾ 즉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 가운데 그 실현가능성이 가장 크고, 쌍방간의 분업에 의한 'positive sum game'이 가능하며 북한 사회의 개방화 및 경제의 시장경제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경제교류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며, 남한의 대북교류정책은 이러한 명

2) 안석교(1994), pp.7~8 참조.

제 위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당위적인 측면외에 남북한 경제교류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볼 때도 또 다른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남한의 경우 첫째, 북한의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어 현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의 3D업종에게는 큰 유인으로 되고 있으며 둘째, 남한기업들은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안정된 자원공급선을 확보하여 남북산업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남한기업들은 최근 들어 임금 및 지가의 상승으로 노동집약적 대량 생산체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동남아나 중국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문화적·지리적 인접성, 원활한 언어소통 등 여타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생산기지로서의 북한의 가치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입장에서 보아도 경제교류를 통해 현재 침체되어 있는 북한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이 앞서 있는 남한과의 교류를 통해 현대적 생산기술의 도입이 가능하게 되어 경제난의 극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이유외에도 남북한은 경제교류를 통해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내용은 경제교류의 구체적인 추진단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경제교류는 궁극적으로 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이라는 데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2. 南北韓 經濟交流 및 統合 展望

1988년 10월의 「남북물자교류지침」과 1990년 8월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남북한간의 경제관계는 실천적 단계에 진입했다.

남북한간의 교역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성격을 보면 교역의 형태는 현재까지 중국·홍콩·일본·싱가포르 등을 통한 간접교역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거래방식은 초기에는 제3국을 통한 현금결제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물물교환방식의 구상무역도 상당한 수준 이루어지고 있다. 반출입 품목의 내용을 보면 초기의 단순상품에서 반제품으로 점차 고도화·다양화되고 있으며 건수당·품목당 반입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요약해서 말하면 현재 남북한 경제교류의 형태는 제3국의 중개 및 국내기업의 현지법인 해외지사를 통한 간접교역에 의존하고 있지만 부분적인 직접교역도 이루어지고 있을 뿐더러, 임가공(위탁가공) 형태의 교역도 점증하는 추세에 있다.

한편 남북한 경제교류 및 경제협력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고 또한 정부에서도 이제 본격화될 경제교류에 대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

기본적으로 남북한 경제교류는 향후의 경제통합 및 통일을 겨냥하는 차원에서 전제되고 논의되어져야 할 것이다. 즉 남북한 경제교류 및 통합의 추진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은 통합의 과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통합후 민족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 경제·사회 각 분야의 이질성을 점진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의의 전개를 위해 여기서는 경제교류 및 협력단계와 경제연합 및 통합과정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⁴⁾

남북한간의 첫단계로서 경제교류 및 협력은 상호 보완성, 산업부문별 비용격차 등으로 그 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체제의 상이성 및 양측 지역의 특수한 대내적 정치·경제 현황이 교류 협력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적 요건은 먼저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여건조성 단계로서의 정치성이 배제된 경제교류협력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및 활동을 지원하고 다자간 접촉방식을 적극 활용하며 북한과 일본, 미국 등 서방국가와의 국교개선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고립을 지양하고 북한사회의 개방을 촉진·확대시키고자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상호보완적 협력을 지향함으로써 상호 자존심과 명분을 존중하면서 북한 경제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며, 이는 남북한 경제·사회 통합후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초기단계에서 단기적 이윤보다는 상호 신뢰를 회복하여 장기협력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는 입장에서 민간이 적극적으로 경제교류에 임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주력하되, 지나친 우리 기업간의 과다경쟁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책과 조정방안을 동시에 강구할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 경제교류는 단계적으로 분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경제교류의 초기단계에서는 우선 북한이 대외개방 및 체제변화를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북한의 외자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기초산업 육성 및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도록 유도하여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험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남북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협력은 남북한의 양 지역이나 제3국에 대한 공동투자, 기술교류, 자원공동개발, 교통·통신·금융 등과 같이 상품거

3) 상공자원부는 1994년 10월 18일 「남북경협대상사업 총괄」이란 자료를 통해 교역, 합작투자, 에너지자원협력, 경제협력지원제도 등 크게 4가지 방향에서 향후 남북경협의 방향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4) 현 정부는 ① 교역·합작 및 공동사업·직접투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협력단계를 거쳐 ② 시장개방, 관세통합을 이루는 남북 연합단계로 진입하고, 나아가 ③ 경제통합의 과정을 거쳐 통일국가단계로 발전되는 3단계 통일방안을 공식 입장으로 표명하고 있다.

래 혹은 자본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하부구조의 남북한 공동구축, 그리고 민간 혹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현금 및 현물의 이전, 혹은 북한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간접적인 지원 등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동투자나 기술이전 등과 같은 경제협력은 직접교역이 충분히 이루어짐으로써 상호간의 신뢰와 경제거래 관행이 어느 정도 정착된 단계에서 진전될 수 있는 것이며 경제적 분업화는 경제공동체 구성의 바로 전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경제협력은 경제통합으로 이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경제협력의 확대가능성은 남북간의 경제적 분업화 정도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⁵⁾

이에 덧붙여 북한의 대외개방을 촉진·유도하기 위하여 한국·북한·일본에 의한 3각협력 혹은 중국·미국·러시아 등이 포함되는 다자간 협력프로젝트의 추진도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경제교류 및 협력이 고도화되면 경제통합단계를 맞이하게 된다. 경제적 통합단계는 인적·물적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이 제거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완전통합의 실현을 위한 기초단계로서 남북한 자유무역지대의 설치와 나아가 공동시장의 개념을 도입하는 조치들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통합의 초기시점에는 북한지역의 생산과 고용안정을 위한 거시경제정책과 더불어 산업정책의 기본틀을 수립·시행하고 기본적인 생산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게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데 중점이 두어질 전망이다.

경제통합과 관련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통화체제에 대한 검토와 소유권 및 사유화에 따른 법경제적 연구도 병행하여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각 부문의 전문기능을 총괄하는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통합을 위한 통화분야와 실물분야의 개혁은 물론 경제법·조세체계 및 행정체계 등의 정비가 필요하게 된다.⁶⁾

III. 南北韓 經濟交流와 人力問題

앞장에서는 남북한의 경제교류의 전개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제교류 및 향후의 경제통합이 진행되는 경우 고려해야 될 인력 및 관련문제들은 무엇인가?

5) 연하청·김형원(1992), pp. 104~121 참조.

6) 이상직·최신림(1993), pp. 62~63.

논의의 성격상 앞장에서 구분한 경제교류 및 협력단계와 경제연합 및 통합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經濟交流 및 協力段階의 人力問題

남북한 경제교류의 단기적인 이점은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 및 기술의 교류를 통한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단계는 초기에 단순한 임가공 방식과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의 합작기업 형태로 협력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다시 말해 단기적으로는 투자규모가 작고 초기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노동집약적 경공업분야를 중심을 협력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 산업재 배치라는 측면에서 그 규모를 점차 확대하여 대규모 장치산업에 대한 투자협력까지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⁷⁾ 이와 같은 남북한 경제교류 및 협력단계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인력정책상의 과제가 있다.

첫째, 이 단계에서는 1차적으로 미숙련근로자의 활용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문제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남한내 노동집약적 산업이 북한지역으로 진출하면 이것은 주로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인력을 고용하여 단순한 노동을 수행하는 것이된다. 그러므로 활용인력에 대한 수요는 단순기능인력 형태이고 이에 고용된 북한인력에 대한 숙련형성은 해당기업에서의 현장훈련을 통해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들 미숙련 인력에 대한 임금 및 근로조건은 투자협정 체결시 함께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생산성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인센티브 기능의 실질적 효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일이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이 동남아에서 야기하고 있듯이 노무관리의 부재에 따른 각종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요청되며 이 단계는 경제교류의 기반조성을 위한 시금석이 되는 만큼 신뢰 형성이 구축될 수 있도록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철저한 노무관리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경제교류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직업훈련을 통한 북한 노동인력의 숙련형성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된다. 이는 향후 남북한 경제통합을 전제로 한 북한 산업구조의 개편과 이에 따른 숙련인력의 양성 및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적응교육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직업훈련시설의 상호협력 방법으로는 북한내(가령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등)에 직업훈련시설, 장비의 설치 및 훈련교사와 전문가를 파견하는 방법과 현재 남한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직업훈련의 외국인 초청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북한인력을 유입하는 방법 및 제3

7) 같은 책 p. 65.

국(가령 중국의 연변 등)에 이들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겠다.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경우 북한내에 직업훈련시설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 될 것이나 자유왕래가 어느 정도 실현되면 남한으로의 인력유입도 병행하여 고려해 봄직하다.

셋째, 직업훈련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1 차적으로는 국내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촉진기금이나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기금의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기금에 의한 지원도 병행하여 고려해 봄직하다. 아울러 직업훈련 대상자의 선발도 중요한 것으로 선발권에 대한 권한행사가 가능도록 하여 숙련기능공 양성을 위한 훈련 대상자뿐 아니라 북한내의 직업훈련교사를 차출하여 국내 기술교육대학 등에서 장기 교육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끝으로 경제교류의 단계에 따라 직업훈련 및 인적교류의 범위를 어느 수준으로 조정하느냐가 중요하다. 물론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남한의 대북한 투자 및 기술이전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제교류의 초기단계에서는 정치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투자의 형식이 완제품 위주로 될 것이므로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이에 맞추어 단순가공용 기술 위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시장경제에 대한 적응 교육, 남한의 산업시찰 등 시장경제에 맞는 산업인력의 배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져야 한다.

2. 經濟聯合 및 統合段階의 人力問題

지속적인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를 통해 동질성을 회복하고 신뢰기반이 구축됨으로써 경제통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 여기에 수반된 문제를 단기간에 극복하고 아울러 소요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에서의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경제통합의 속도와 범위, 토지 및 재산의 소유권 및 사유화 방안, 기업의 민영화 방법, 통화교환 비율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관련된 법·제도의 정비 등 중요정책문제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제통합이란 단일한 시장기구를 갖는다는 것으로 이는 노동의 이동이 자유롭고 시장기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노동시장의 통합이 동시에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통합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인력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 및 임금문제이다. 경제통합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몇가지 인력활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통합이 이루어져 노동이동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해도 통합초기에는 일정기간 동안 노동이동의 부분적인 제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점이다. 즉 남북한간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임금격차는 북한내 노동인구의 유출을 가져와 북한 지역내의 산업공동화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북한내 단순노동의 남한으로의 대거 이동을 제한할 필요도 있다. 다만 숙련인력이나 남한내 인력부족업종에 한해서는 노동이동을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직업알선기관 등을 통해 수급불균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독일의 경험에서 그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데, 즉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생산성을 상회한 급격한 임금증가율과 동독지역 노동인구의 서독지역으로의 이주에 따른 동독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와 이로 인한 기업도산 및 실업문제의 심화를 거론할 수가 있겠다. 독일의 경험은 노동이동의 자유로움으로부터 나타난 것인만큼 남북한의 경우 경제통합이 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노동이동을 부분적으로 제한하여 실업률을 줄이고 고용안정을 유지하며 또한 북한지역의 산업공동화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제통합이 이루어진다 해도 남한지역과 북한지역간의 경제력의 차이는 존재하게 되므로 이는 필연적으로 양 지역간의 임금격차문제를 유발시키기 마련인데 이를 어떻게 충격없이 해소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있다. 물론 이러한 임금격차문제는 앞에서 이야기한 고용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즉 경제통합후 예견되는 노동이동 및 실업문제, 경제의 공동화 문제는 양 지역간의 임금격차에 기인하는 바가 클 것이다. 따라서 임금격차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임금보조금을 지불하는 방법과 투자보조금을 지불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임금보조금이 단기적 성격을 지닌 데 반해 투자보조금 지원은 장기적으로 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지불능력의 강화를 제고시키고 아울러 고용의 확대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적이다. 그러나 투자여건의 조성문제 등 투자보조금의 지원에 따른 효과에도 의문이 있고 단기적인 어려움이 극복되지 않고서는 장기적인 관점의 경기회복도 어려우므로 이 두 가지 방안을 적절히 병행하여 임금보조금 지원은 그 성격상 한시적인 성격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임금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두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임금보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조세권에 관련된 문제이다. 조세권의 경우 경제통합단계에서는 정치체제가 상이하므로 임금보조가 세금으로 흡수되어 그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검토도 함께 병행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경제교류가 활성화되고 경제통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실업문제 및 인력활용

의 효율적 방안에 대한 장단기 대책의 수립이 요청된다. 결국 경제통합에 따른 고용, 인력, 실업문제는 별개의 사안이 아닌 함께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이는 단기적으로는 직업훈련의 확대, 공공 및 직업알선기능의 강화, 임금보조적인 성격의 사회보장 지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의 촉진을 통한 경제의 활성화로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동독지역의 과도한 임금상승으로 인한 고용악화를 방지하고자 동독지역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안을 수정하였고⁸⁾ 1994년 고용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장 및 고용촉진시행계획」을 통해 시간제 근무의 확대,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 민간직업알선업의 허용, 장기실업자에 대한 저임금노동기회 등을 제도화하였다.⁹⁾

넷째, 이러한 고용 및 임금문제 이외에도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실시문제가 있다. 즉 현재 남한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될 예정인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대한 제도도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면 함께 검토 및 시행되어질 만큼 이에 대한 준비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남북간의 교육분야에서의 제도 및 구조적 차이점을 극복하여 이를 통합해 나가고 동질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망된다. 남북한간의 교육분야에서의 상호 이해증진을 위해 학자, 교수, 교육자, 교육행정가, 현직교사들의 호혜적 상호교류의 협력방안, 그리고 교육자료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요망된다. 특히,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공히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지식을 공급함으로써 통일국가체제에 대한 바른 인지와 평가가 가능할 것이며 그럼으로써 선택한 체제에 자발적인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남북한의 경제교류에 따른 인력문제는 북한지역의 경제활성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가 이제부터 심도있게 논의되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덧붙여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구의 설립 및 통일을 대비한 기금의 조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 이는 구 동독지역 근로자들의 임금을 1993년 6월 1일부터 서독의 75%, 1993년 9월 1일부터 77%, 1995년 7월 1일부터 94%, 1996년 7월 1일부터 10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9) 한국은행(1994), pp.29~31.

IV. 맷 음 말

남북한의 경제교류는 향후 통일이라는 대전제에서 볼 때 상호교류를 통한 신뢰회복 및 경제협력을 통한 통합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므로 교류 및 통합과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접근이 필요하다. 즉 남북한 경제교류 및 통합의 추진에 있어서 기본원칙은 통합의 과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통합후 민족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 경제·사회 각 분야의 이질성을 점진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남북한의 경제교류 및 통합과정에는 여러 가지 법·제도적인 상황들이 검토되어져야 한다. 이 중 인력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경제교류단계에서는 미숙련근로자의 활용에 따른 합리적인 인사·노무관리제도의 실행 및 직업훈련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숙련기능공의 양성을 통한 산업구조조정에 대처한다는 목 적 외에도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내용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통합단계의 경우 경제통합의 속도와 범위, 토지 및 재산의 소유권 및 사유화 방안, 기업의 민영화 방법, 통화교환 비율 및 이와 관련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단계에는 고용 및 실업, 임금격차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에는 노동이동의 부분적 제한을 통해 북한 산업의 공동화 및 실업문제를 극소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임금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투자보조가 바람직하나, 한시적으로 임금보조도 병행해서 실시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용 및 임금 이외에도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양 지역에 확대적용 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도 아울러 필요하다.

결국 향후의 통일을 전제로 하여 경제교류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한 준비를 세심하게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강정모, 「북한의 무역 및 대외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1. 2
- 김유찬, 「독일통일 3년에 대한 경제적 평가」, 한국조세연구원, 1993. 11
- 대한상의, 「남북한 경제교류의 과제와 대응방안」, 1993.
- 베르너푸쉬라·김원식 편, 「통독독일의 사회경제적 변화」, 후리드리히 에베르트재단, 1992.
- 연하청·김형원, 「북한의 개방전망과 남북한 경제협력」, KDI, 1991. 겨울.
- 안석교, “남북한 경제교류의 당위성과 접근방식,” 「북한연구」, 16호, 대륙연구소, 1994.
- 이상직·최신림, 「남북한 경제통합의 추진방향」, 산업연구원, 1993. 12.
- 조동호, “북한의 노동력 현황,” 「전환기의 북한경제」, 제4회 북한경제 국제학술회의, 1994.
- KDI, 「남북한 경제협력의 당면과제와 두만강지역 개발계획」, 1992. 6.
- 한국은행, 「통일후 독일경제의 과제와 전망」, 1994. 6.
- Akerlof, George A., and others, "East Germany in from the Cold : The Economic Aftermath of Currency Union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Brookings Institution, January, 1991.
- Bryson, P. J., "The Economics of German Reunification :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16(1), 1992.
- Molle, W., *The Economics of European Integration*, Dartmouth, 1990.
- Kuhl, J, "East-Germany Labour Markets ; Problems, Prospects and Policy," presented at International seminar organized by FES and KIEP, Seoul, October 2, 1992.